



가) 입법예고: 고성군공고 제2025-812호

- 예고기간: 2025. 4. 30. ~ 2025. 5. 20.(20일간)

- 예고결과: 의견없음

나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
다) 부패영향평가: 해당사항 없음

라) 신·구조문대비표: 해당사항 없음

마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붙임 참고

### 3. 전문위원 검토요지(전문위원: 조호철)

#### ○ 폐지 목적

- 본 폐지조례안은 준수제출 안건으로, 고성화력발전소(현 고성하이발전소) 건설과 관련된 지원 및 환경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13년에 제정되었으며,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발전소 완공 시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도록 규정되어 있음,
- 현재 고성화력발전소는 2021년 11월 상업 운전에 착수함에 따라, 조례목적이 완료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하므로 조례의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음. 이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○ 주요 내용

- 『고성화력발전소 지역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』를 폐지한다.

#### ○ 종합검토 의견

- 본 안건은 조례의 존치 목적이었던 고성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 지원·대응 활동이 완료되었고, 조례 부칙에서 정한 유효기간 역시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(위원회 회의록 기재)

5. 토 론: 없음

6. 심사결과: 2025. 7. 16.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